



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규정

제정일	2014. 5. 1
개정일	2021. 5. 1
개정차수	3차
담당부서	창업교육센터

- 제 1조 (명칭) 본 위원회는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- 제 2조 (목적) 본 위원회는 본교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구축을 위한 각종 활동을 협의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조 (구성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으로 한다.
 ② 위원장은 창업교육센터장이 된다. (개정 2014.11. 1, 2015. 6. 1)
- 제 4조 (사업)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1. 대학 내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계획 및 추진방안 수립
 2. 창업휴학, 창업대체학점, 창업학점 교류제 인정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 (개정 2021. 5. 1)
 3. 창업강좌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
 4. 기타 창업교육 관련 학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
- 제 5조 (회의)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 6조 (위원회의 사무관장) 위원회의 제반 사무는 창업교육센터에서 관장한다. (개정 2015. 6. 1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